

2026. 7. 1.

수 신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

제 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정 의원 발의)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발의자

박미정



(발의자 : 1 명)

(찬성자 : 9 명)

(발의자 · 찬성자 서명 붙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정 의원 발의)

의안번호	6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박미정 의원(1명)

찬 성 자 : 유지웅·오지환·김해바른·
김형우·정민우·안종숙·
이은경·신정태·하서영

1.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 이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어르신 교통비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구청장의 지원계획 수립 책무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마. 지원 중단, 환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 1)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및 제10조의12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붙임2])

다. 합 의 : 주민생활국 어르신행복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조례안 예고 예정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 제1호,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제2호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어르신 교통비는 지원 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르신에게 지원할 수 있되, 구체적인 사항은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통비 지원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

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지원 시기,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원 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3. 교통비 지원을 받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를 이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등이 발견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 사업(이하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의 종류)**

제7조(자동차의 종류)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제7조 관련)

구 분	자 동 차 의 종 류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6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 시외버스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p>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p> <p>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p> <p>다. 시외고급고속버스: 제8조제8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p> <p>라. 시외우등직행버스: 제8조제8항제2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p> <p>마. 시외직행버스: 제8조제8항제2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p> <p>바. 시외고급직행버스: 제8조제8항제2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p> <p>사. 시외우등일반버스: 제8조제8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p> <p>아.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8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p>
3. 택시운송사업	<p>승용자동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p> <p>가.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p> <p>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p>

4. 마을버스운송사업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7.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승용자동차 또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비고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13인승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붙임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여부	판단 내용
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 대상)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지원 대상의 기준을 규정한 선언적 조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제4조(교통비 지원 등)	○	[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이용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 인구 추계 및 지원 한도액 가정을 통한 지원금 비용 발생이 예상됨 ⇒ '27년 기준 총 5,744,721,000원 소요예상
3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소관 부서(어르신행복과)의 통상적인 내부 행정업무 범위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제6조(지원체계 구축)	△	[기술적 추계 곤란] 교통비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의 위탁 계약 등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계획(기존 시스템 연계 여부, 신규 구축 범위 등)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방식이 확정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5	제7조(지원 중단 등)	x	[재정소요 요인 없음]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의 환수 조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법령 준용 등 행정절차 및 사후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6	제8조(사후관리)		
7	제9조(준용규정)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교통비 지원 등(안 제4조)

나. 전제

- (교통비 지원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를 가정

-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강남구·종로구 사례를 고려하여 실수혜율 60%, 1인당 분기별 평균 지급액 31,000원을 적용함.
- ※ 서초구의 다양한 어르신 인프라(노티나무쉘터 6개소, 시니어라운지 10개소 등) 구축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으나, 인근 강남구보다 적은 지하철 역수,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권(우면·내곡) 존재, 사업 안정적 정착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평균지급율을 상향 조정함.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의 경우 실제 전년 대비 증가율 5.7% 적용함. 2027년의 경우 최근 평균 증가율 4.9% 적용하였으며, 이후 4% 적용함.

※ 서울특별시 서초구 65세 이상 인구 추계(2027년~2031)

구 분	2026.5(현재)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65세 이상 서초인구수(명)	73,613	77,214	80,303	83,515	86,855	90,329
전년 대비 증가율	5.7%	4.9%	4.0%	4.0%	4.0%	4.0%

- 본 추계는 교통비 지급액만 반영한 금액이며, 시스템 구축비·홍보비·운영비 등은 별도 소요(약 3억 원)
- (발생기간) 2027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7~2031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시기에 따라 비용 발생기간 변동 가능
- (미 고 려)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2027년~2031년)

라. 추계방법: 서초구청 어르신행복과 제공자료 활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31,115,269천원 ('27년~'31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	-	-
	소계	-	-	-	-	-	-
세출	○ 교통비 지원	5,744,721	5,974,543	6,213,516	6,462,012	6,720,477	31,115,269
	소계	5,744,721	5,974,543	6,213,516	6,462,012	6,720,477	31,115,269
□ 총 비용		5,744,721	5,974,543	6,213,516	6,462,012	6,720,477	31,115,26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자체	지방세수입	5,744,721	5,974,543	6,213,516	6,462,012	6,720,477	31,115,269
	수입	세의 수입						
		보조금						
	의존	재원	지방교부세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기타								
합계		5,744,721	5,974,543	6,213,516	6,462,012	6,720,477	31,115,269	

5.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 해당 안은 소관부서의 교통비 지원계획(일부 또는 전부 지원, 지원 시기 등)에 따라 재정지출이 달라질 수 있음

○ [추계액 활용유의]

- 향후 소관부서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6. 작성자

- 구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장 김경미, 정책지원관 양선영(02-2155-707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교통비 지원 등(안 제4조)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총 31,115,269천원 ('27년~'31년)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교통비 지원 등	5,744,721	5,974,543	6,213,516	6,462,012	6,720,477	31,115,269

- 산출내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65세 이상 인구증가율 추계: 2027년 4.9%, 2028~2031년 4.0% 적용함.

구분	2026.5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65세 이상 서초인구수(명)	73,613	77,214	80,303	83,515	86,855	90,329
전년 대비 증가율	5.7%	4.9%	4.0%	4.0%	4.0%	4.0%

- 사업 시행 중인 강남구·종로구 사례를 고려하여 실수혜율 60%, 1인당 분기별 평균 지급액 31,000원을 적용함.

① 2027년 소요예산 = 5,744,721,600원
= 77,214명 × 실수혜율 60% × 31,000원 × 4분기

② 2028년 소요예산 = 5,974,543,200원
= 80,303명 × 실수혜율 60% × 31,000원 × 4분기

③ 2029년 소요예산 = 6,213,516,000원
= 83,515명 × 실수혜율 60% × 31,000원 × 4분기

④ 2030년 소요예산 = 6,462,012,000원
= 86,855명 × 실수혜율 60% × 31,000원 × 4분기

⑤ 2031년 소요예산 = 6,720,477,600원
= 90,329명 × 실수혜율 60% × 31,000원 × 4분기

※ 강남구, 종로구 사업실적 참고

- 강남구 최근 1년 실 지급실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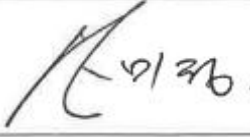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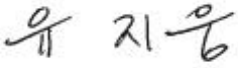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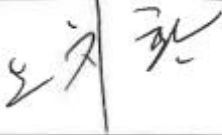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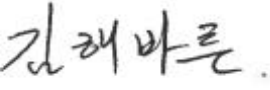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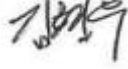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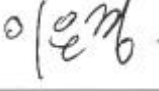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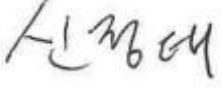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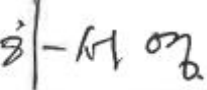
지급시기	지급인원	지급액	1인당 평균 지급액
2025.3월	34,797명	1,010,000,000원	29,026원
2025.6월	39,442명	1,231,000,000원	31,210원
2025.9월	42,292명	1,332,000,000원	31,495원
2026.3월	45,260명	1,376,000,000원	30,402원
계	161,791명	4,949,000,000원	30,589원

- 종로구 최근 2분기 실 지급실적 분석

지급시기	지급인원	지급액	1인당 평균 지급액
2025.12월	12,200명	287,000,000원	23,525원
2026. 3월	14,000명	478,000,000원	34,143원
계	26,200명	765,000,000원	29,199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정 의원 발의) 서명부

발 의 자		찬 성 자	
의 원 명	서명·날인	의 원 명	서명·날인
박미정		유지웅	
		오지환	
		김래바른	
		김형우	
		정민우	
		안종숙	
		이은경	
		신정태	
		하서영	

2015. 11. 20